

2024년 임산물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업체 모집공고

산림청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는 임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「임산물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 수출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1. 지원대상 : 임산물 및 국산 임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 제조·가공 및 수출업체

-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(HSK) 상 HS코드 기준 산림청 소관 단기소득임산물 수출업체 (목재·석재류 제외)
- 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은 지원 제외

2. 지원품목 : 임산물 및 국산 임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

- 산림청 소관 임산물 HSK CODE 내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

3. 지원내용

구분	지원내용
지원비율	○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제공 관련 통관·운송비의 90% 지원(부가세 제외)
지원내용	○ 국제특송(EMS, DHL) 샘플발송비 지원 : 운송비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○ 시험수출(정식통관) 샘플송부비 지원 : 국내·외 내륙운송비, 수출신고필증 발급비, 현지 통관 비용, 항공(해상)운송비 등 ※ [2024년 임산물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 정산기준] 참고 필수
지원한도	○ 연 100만원 / 1업체 *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및 선착순 지원
지원조건	○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(HSK) 상 HS코드 기준 산림청 소관 단기소득임산물 ○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- 수출신고필증 상 ⑩거래구분 92 / ⑩결제방법 GN 무상거래 표기되어야 함 ○ 회당 샘플 발송물량은 10BOX & 50kg 한도 내에서 지원 ○ 동일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 최대 4회 인정
필수 유의사항	○ 국제 특송 및 시험수출 모두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○ 개인·법인업체 동일 대표자일 경우, 대표자 관계 등을 파악하여 지원대상 일원화 ○ 연말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 제출 요청 시 <u>사업 성과 제출 협조</u>

4.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`24.11.30. * 사업공고일 이전(`23.12월~사업공고일) 발송분 소급 지원

5. 신청방법 :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6. 지급절차 : 수출업체 신청(매 분기 말까지) → 본사 검토 → 정산 지급(4·7 10월초)

7. 제출서류

구 분	내 용		비 고
공통	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 사본 ③ 지원신청서 (엑셀파일 별첨) 및 개인정보 ④ 바이어 반응 테스트 (엑셀파일 별첨) ⑤ 수출신고필증 (⑩거래구분 92, ⑫결제방법 무상거래)		공통 제출 증빙 5건 모두 제출
추가 필수 증빙	국제특송	① 인보이스 * EMS의 경우 운송장 ② 영수증	해당 항목 제출
	aT 수출지원 사업 최초 신청업체	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제출 (아래 중 택1 *붙임5 참고) (1) 사업자공인인증서로 온라인 제출(첨부파일로 방법확인) (2) 동의서, 법인인감증명서(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),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무역통계진흥원으로 우편제출 요망	
	시험수출	① 항공: AWB, 해상: B/L ② 운송업체 대금청구서 - 인보이스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 등	

*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, 사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(직인 포함) 날인 후 업로드

※ (참고) 수출신고필증 발급 방법

- 관세사(관세사무소)를 통한 발급신청
- 관세청 수입 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전산 신청 : [http://portal.custom.go.kr\(T.1544-1285\)](http://portal.custom.go.kr(T.1544-1285))
- EMS 이용 시 일부 대형우체국에서 관련 절차 진행

8. 기타 유의사항

- (정산협조) 정산 관련하여 aT 요구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에 협조
- (성과제출) 연말 수출성과 제출 관련하여 aT의 요청 시 제출 필수
- (중복수령 금지) aT 및 정부(지자체, 기타 공공기관) 지원사업 관련 중복 수령 적발 시 환수조치 및 해당 연도 참여 제한

9. 관련문의 : 농임산수출부(061-931-0826, 0829), imat@at.or.kr

2024. 2.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

구분	내용
지원 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(HSK) 상 HS코드 기준 산림청 소관 단기소득임산물 ○ 수출신고필증상 ③제조사, ②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에 기재된 업체로 인정하되, 동일필증으로 중복지원 불가(적발 시 환수 및 해당연도 지원 제한) ○ 개인·개인, 개인·법인 또는 법인·법인 등 각 신청 업체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, 모든 신청을 1개 업체 기준으로(지원 한도 및 기준 등)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·개인, 개인·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인적 사항이 동일한 경우 동일 업체로 판단 - 법인·법인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공시된 기업에 포함된 경우 동일 업체로 판단 - 대표자 관계 확인 등 사실 확인을 위해 aT 요청 시 법인등기부등본, 대표자 인적사항, 감사보고서(주석 포함) 등 관련 증빙 제출 * 동일 업체 간주 시, 접수번호 기준 먼저 신청한 업체를 기준으로 지원함
물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회당 샘플 발송물량은 50kg & 10 BOX 한도까지 지원(모두 충족) ○ (중량) 50kg 제한의 경우, 다음의 기준에 준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상운송 : 수출신고필증상 ⑥순중량 기준 - 항공운송 : 항공운송장(AWB) 내 운임 산출 중량(Chargeable Weight) 기준 ○ (수량) 10 BOX 제한의 경우, 수출신고필증상 ⑤총포장개수 기준 ○ 인보이스의 중량·품목이 필증과 같아야 하며 상이할 시 지원 제외 ○ (기타) 혼적 시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(분리 불가 시 지원 제외)
바이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 대상 바이어 :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유통, 소매, 무역 등 임산물을 취급하거나, 취급 희망 업체(개인 불가) ○ 동일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 최대 4회 지원 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복 4회의 경우, 수출신고필증상 ④구매자로 확인하며, 동일 바이어 회사의 다른 담당자에게 보낸 경우 같은 바이어로 간주함 * (예시) aT market, 에이티마켓, aT market.co.ltd : 표기는 다르나, 실질 동일 업체일 경우 1업체로 간주 - 다만, 바이어 법인격이 다르거나, 국가가 상이한 경우 각각 별도 바이어로 인정 (바이어 법인격 및 국가 구분 불가 시, 별도 지원 불가)
지원 불가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 ○ 운송비, 면장발급비 등 국내 발생 부가가치세 ○ 제조사에서 수출업체로 발송한 비용 제반 ○ 국내외 내륙운송비의 경우 샘플 발송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 ○ 포장 상자 구매요금, 서류 봉투 비용 등 물품 포장 관련 비용 제반 ○ 정상 수출품과 혼적하여 분리할 수 없는 발송 건 ○ 송금증에서 송금자, 수신인, 송금일자,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건 ○ 인보이스의 중량·품목이 필증과 상이한 건
기타 참고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송의 경우에도 반드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○ 반송 및 현지 폐기 처리된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○ 사업비가 조기 소진될 경우,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선착순 ○ 모든 증빙서류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업로드 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정 및 추가보완 시, 해당 서류 글로벌 사이트상 파일 수정